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각각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p> <p>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

별표 1 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